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29
----------	--------

제출일자 : 1999. 5 . 2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일부 조항과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

주요골자

-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제4조·제5조·제6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삭제
-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제14조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 '97. 12. 4)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개정

개정근거

- 행정규제 사무의 근거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을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제7조 내지 제10조”로 하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19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제10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제7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내지 제34조”를 “제16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화조 등의 설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정화조 등의 준공검사)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 시설의 설치도는 변경을 완료한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정화조 등의 관리)①시행규칙제19조에 의한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처리용량200m ³ /일 이상의 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2. 처리용량200m ³ 일 미만, 10m ³ 일 이상의 시설은 년1회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결과는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취하여야 한다. ③법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및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바 고장에 의한 시설 수리시(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 설비등 정화기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을 설치한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의 용도 변경 증축개축등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4조의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 등의 설치 당시에 이에 대한 변경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 (생략)</p> <p>제8조 (분뇨수집운반)①군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을 위한 효율적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u>제10조의</u> 대행업자로 하여금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분뇨수집운반)①-----</p> <p>-----제7조-----</p> <p>-----</p> <p>②(현행과 같음)</p>
<p>제9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군수는 <u>법제 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u> <u>규정에 의하여</u>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군수는 <u>법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u> <u>규정에 의하여</u> ---</p> <p>-----</p>
<p>제10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7조 내지 제10조 (현행과 같음)</p>
<p>제14조(허가취소)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사육자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의 현저한 여건변화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경우 	<p>제14조 <삭 제></p>
<p>제15조 내지 제19조 (생략)</p>	<p>제11조 내지 제15조 (현행과 같음)</p>
<p>제20조(분뇨관련영업허가)①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분뇨의 발생량,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p>	<p>제20조 <삭 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년1회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분뇨처리(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p>제21조 <삭 제></p>
<p>제22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①관계공무원은 분뇨관련 수거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p>	<p>제22조 <삭 제></p>
<p>제23조(처리실적보고)법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자는 분뇨처리 또는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실적을 별지2호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 말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 <삭 제></p>
<p>제24조 내지 제34조 (생 략)</p>	<p>제16조 내지 제26조(현행과 같음)</p>

[별표 5]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50	70	100
2.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30	40	50
3.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하는 경우	50	70	1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100	100	100
4.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22조, 제27조)	100	100	100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법 제13조제2항)	50	7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6.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50	70	100
7.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법 제33조제3항)	50	70	100
8. 간이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제1항)	50	70	100
9.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7조)	50	70	100
10.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30	40	50
11.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4조제4항, 제5조)	50	70	100
12. 분뇨등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법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30	40	50
13. 분뇨등 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35조제3항)	50	70	100
14. 분뇨등 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5조의2제2항)	30	4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5. 분뇨등 관련영업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35조의3제1항)	50	70	100
16.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5항)	50	70	100
17.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3항)	50	70	100
18.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2항)	30	40	50
19.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50	70	100
20.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70	100
21.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 자, 분뇨등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	40	50
22. 분뇨등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로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	30	40	5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3. 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제조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제1항)	30	40	50
24.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3제2항)	20	30	50

[별지 제2호 서식]

문서번호 :

기관명 :

수신 :

발신 :

제목 : 분뇨처리(설계·시공)상황 보고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실적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월 별	계	분뇨및 정화조오니 처리내역(단위 : kℓ)				설계시공내역(건)	
		분뇨처리시설		농지투기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설계	시공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